

## 청두, 지식재산권 법 집행 및 감독 업무에 대한 논의

**최** 근 청두시 지식재산권국은 “레이위(雷雨)”, “텐왕(天網)” 행동과 “5.26” 공정건설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지식재산권 법 집행 지도 감독 업무를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현(郫縣)에서 지식재산권 법 집행 현장 참관 및 지도 감독 회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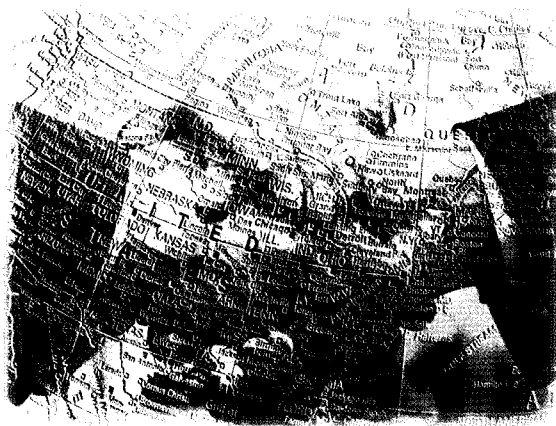
청두시(成都市) 지식재산권국, 피현(郫縣) 지식재산권국은 법 집행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2개의 대형 약품 소매기업의 약 3천여 종의 약품에 대하여 표본 검사를 진행하였다. 진행된 검사는 다음과 같으며, 신더우(新都), 평저우(彭州), 원장(溫江), 다이(大邑), 더우장옌(都江堰)의 현(縣) 책임자가 참관하였다.

- ① 일부 약품의 겉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특허 번호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함
- ② 규범에 어긋나게 사용된 특허번호에 대하여 교정을 진행함
- ③ 상가를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진행함

법 집행 참관과 함께 시(市)지식재산권국 조직 시편구(西片區) 지식재산권국의 법 집행 업무 책임자는 지도 감독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각 구(區), 시(市), 현(縣)의 법 집행 업무 책임자들의 지식재산권 법 집행 업무 전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청두시 지식재산권국은 4/4분기 법 집행 업무를 계획하였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특허 법 집행 실무, 특허 보호 일상 업무 전개, 특허보호 사례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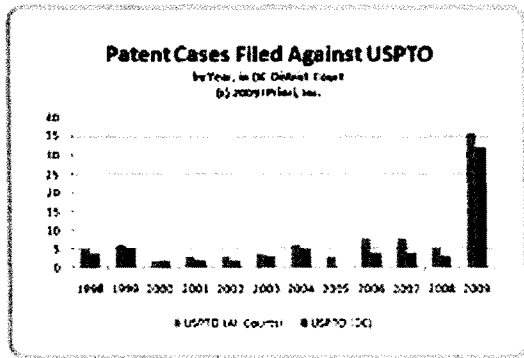
법 집행 현장 참관과 지도 감독 좌담회를 통하여, 구(區), 시(市), 현(縣)의 법 집행원들은 특허 법 집행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고취시켰다. 또한 향후 더욱더 적극적인 특허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두시의 “5.26” 공정 건설의 가속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자료출처 : [www.chengdu.gov.cn](http://www.chengdu.gov.cn)



## 특허소송에서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역할

아래 표에 따르면 2009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는 USPTO를 대상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제기되었다. 2009년 동안 워싱턴 DC 지방법원에는 39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으며(특허상표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모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USPTO를 대상으로 제기된 특허 소송 건수

가장 많이 제기된 소송은 특허상표청(USPTO)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09년 소송의 급증은 주로 특허권자들이 USPTO에 요구한 특허기간 조정 검토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Wyeth v. Kappos 판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특허권자가 154조(b)(1)(A)항과 154조(b)(1)(B)항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특허기간을 계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두 변론은 지난 10월 초에 실시되었다.

다른 소송으로는 35 U.S.C. § 293에 따라 외국 특허권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확인판결 명령신청(declaratory judgment actions) 등이 있다. 이 특허법 조항은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특허에 관한 대물 관할권(in rem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 법인이 다른 미국 관할지에 지정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는 한 워싱턴 DC 지방법원을 재판지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HTC v. Luzzatto, 08-998 소송에서 대만 기업인 HTC는 “전화 인식 통화 장치”에 대한 Luzzatto 특허의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Luzzatto가 자신의 특허권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소송 기각을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법원은 293조가 특허권자의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100조(d)항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의에 특허를 발급받은 최초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권한의 승계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을 기각 거절의 근거로 들었다.

자료출처 : [www.dcd.uscourts.gov](http://www.dcd.uscourts.gov)

## 후남 3대 첨단기술산업단지, 국가지재권 시범단지로 지정

**후** 남성(湖南省) 지식산업국은 국가 지식산업국이 상탄(湘潭)첨단기술 산업단지(고신구)를 국가 지식재산권 시범단지로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상탄 첨단기술 산업단지(고신구)는 주저우(株洲) 첨단기술 산업단지(고신구)와 창사(長沙) 경제개발구(經開區)에 이어, 후남성에서 3번째로 국가지식산업권 시범단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후남성의 창사·주저우·상탄 3대 단지가 모두 국가지식산업권 시범단지로 지정되었다. 시범 기간은 향후 3년 동안이고, 시범 단지는 국가 지식산업권 전략과 성부(省部)내의 협상 업무 시스템의 중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탄 첨단기술 산업단지(고신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조치를 실시하여, 단지 내 기업 지식재산권을 대폭적으로 창출시켰다.

- 실시한 조치는 ① 지식산업 관리시스템 개선, ②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촉진, ③ 혁신형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함
- 조치 결과는 ① 특허 출원 561건, ② 150여 항목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임

최근 이 단지는 첨단기술 제품 2천여 종과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제품 1천여 종을 보유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또한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상탄 첨단기술 산업단지(고신구)발전의 주요한 원동력 역할을 하였다. 상탄 첨단기술 산업단지는 국가지식산업권 시범 단지로 승인된 후,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주요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상품·산업·기업을 형성하여 향후 상탄시가 신(新)공업화를 추진하는데 큰 성장 동력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www.hunan.gov.cn](http://www.hunan.gov.cn)

## USPTO, 특허·상표 보관 도서관 지정

**미** 국 특허상표청(USPTO)은 Sacred Heart 대학의 Ryan-Matura 도서관을 공식 특허상표청 보관 도서관(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PTDL)으로 지정하였다. PTDL은 670만 건의 특허와 200만 건에 달하는 상표 등록, 다양한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로 기록된 관련정보를 보관하여 공공의 다양한 지식재산 요구를 지원할 것이다. Sacred Heart 대학은 미국 전역 80개 PTDL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10월 26일 Ryan-Matura 도서관에서 성대한 개관식을 열었다.

임시 도서관장인 Gavin Ferriby 박사는 “PTDL은 코네티컷 주의 산업계에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며 Ryan-Matura 도서관은 발명가들과 기업가들에게 특허와 상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을 도울 전문 인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USPTO 특허·상표 보관 도서관 프로그램은 특허와 상표 정보를 전파하고 버지니아주의 UIPTO 도서관을 직접 찾을 수 없는 발명가들과 변리사, 대리인, 연구원, 기업가, 학생, 역사학자, 일반 대중을 지원하는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이다.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며 특허 및 상표 문서 이용과 USPTO 데이터베이스 훈련, USPTO 웹사이트 접속, 공공 지식재산권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특허·상표 보관 도서관 프로그램은 1871년 공공이용을 위해 도서관에 특허인쇄물을 배포하도록 한 연방법에 따라 시작되었다. 현재 PTDL 도서관 목록은 [www.uspto.gov](http://www.uspt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 [www.uspto.gov](http://www.uspto.gov)

## 미 대학들, 특허 개혁에 대한 우려 표명

**미** 국 대학 단체들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특허개혁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편지에서 대학 단체들은 현재 상원 특허법안인 S.515가 상원 법사위원회의 협상에 묶여 있음을 지적하였다.

법사위원회는 특허개혁에 관한 대립 의견들을 절충하여 '2009 특허개혁법'을 지난 4월 초 상원에 제출하였다. 관련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상원 투표는 올 가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법사위원회의 대변인은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 대표자들에 따르면 특허개혁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특허 승인 후 문제제기 절차에는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특허의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제기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대학 단체가 상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현재 특허성 문제제기 기준에 따르면 재심사 요구의 90%가 승인될 것임. 악명 높은 로펌들이 뻔뻔스럽게 밝혔듯이 일부 기업들은 정당한 특허를 매도하는 문제제기를 통해 경쟁을 막고 시장을 지키고자 할 것임
- 이 서한에는 미국 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미국 교육회의(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대학 기술관리자연합(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등 6개 대학 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하였음

대학들은 최근 특허의 획득과 라이선싱, 집행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대학은 스폰서 기업들과 충돌을 빚기도 한다.

이 서한은 또한 S.515의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경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학 발명가들은 학술지에 먼저 발명품을 게시한 후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본적인 발명은 상업적 이용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학 단체들은 학술지와 학회 발표를 통한 연구결과의 전파를 지원하는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



## EPO 청장, 업무공유와 PCT 개혁 강조

**EPO** 청장 Alison Brimelow는 업무공유가 특허 출원인들과 전 세계 특허청에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를 향한 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워싱턴 AIPA 연례 회의 연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64,000명의 출원인이 특허를 제출한 PCT에 세계 업무공유를 위한 큰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을 밝혔다.

세계적으로 많은 업무공유 계획이 실험 중이며, 이들의 공통분모는 불필요한 특허청 업무의 중복을 제거하는 견고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유럽특허 네트워크(European Patent Network, EPN)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그리고 PCT이다. Alison Brimelow는 특허청 간의 높은 업무 품질과 신뢰가 성공적인 업무 공유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PPH 계획에 관련하여 EPO 청장은 EPO가 최근 EPO-USPTO PPH 예비 프로그램을 연장하였으며 EPO-JPO PPH 예비 프로그램 준비 중임을 밝혔다.

Brimelow 청장은 PPH 예비 프로그램이 특허청 간의 신뢰를 촉진할 수 있는 뛰어난 도구임을 인정하고 PPH를 통해 얻은 경험이 업무 이용에 관련하여 매우 귀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실질적인 적절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경제 위기와 특허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EPO의 대응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업무 공유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EPO는 기존의 PCT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PCT 기관에 해당하는 특허청 업무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epo.org](http://www.epo.org)

## 오바마 대통령, 미국 청정기술 보호 촉구

**오**바마 대통령은 MIT를 방문하여 미국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선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는 현재 21세기를 이끌 기술을 결정하기 위해 평화로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본인은 미국이 바로 이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청정 기술은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미국 기업들은 리더십에 따른 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60명의 의원들은 서신을 통해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목요일 환경 보호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개발도상국들에 맞설 것을 촉구하였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문제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과거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들은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지식재산권 이용을 요청하였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지식재산권 이용 요구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에너지기술의 개발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원들은 이러한 요구에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지식재산권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Rick Larsen과 Marsha Blackburn 하원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미국의 발명과 일자리, 경쟁력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며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내주는 대신 자금지원과 기반시설, 시장접근 장벽과 같은 실제 장애물을 제거하여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오바마 정부와 온난화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던 미국 상무부는 의회의 서신을 지지하였다. 상무부의 세계 지식재산권 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부회장이 Mark Esper는 의회와 정부의 지식재산권 옹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료출처 : [www.portfolio.com](http://www.portfolio.com)

## 국가지식산업국 국장, 태국 상무부 부부장과 지재권협력 논의

**국** 가지식산업국 텐리푸(田力普) 국장이 중국정부를 대표해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中国-东盟知识产权领域合作谅解备忘录)”에 서명하였고, 지난 10월 25일 태국 상무부 부부장 Alongkom Ponlaboo과 회견하여 양국의 향후 지식재산권 협력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텐리푸(田力普)국장은 중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중·태 양국의 지식재산권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태 양국의 지식재산권국은 수년 동안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 범위·특허 심사·중소기업 창신 능력 장려 등의 분야에서 이미 효과적인 교류를 전개하여 왔으며, 중국-아세안 협력 체제아래, 양국은 향후 협력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한층 강화된 실질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태 양국은 풍부한 전통 지식과 농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영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향후의 협력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 양해각서는 쌍방이 정책 측면에서의 교류 이외에 여러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① 지식재산권 심사, ② 품질 관리, ③ 심사원 교육, ④ 자동화,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분야이다.

태국 Ponlaboot 부부장은 텐리부 국장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쌍방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같다. 이는 향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중·태 양국간의 무역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실무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럼으로 양국이 무역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쌍방이 지식재산권의 법 집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국 모두 중·태 지식산업국 직원들의 상호방문을 환영하였고, 서로 지식재산권 법률·교육 등 많은 의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회견에는 태국 상무부 상무비서 Yanyong Phuangrath, 태국지식산업국 대리국장 Wiboonlasana Ruamraksa이 참석하였다.

자료출처 : www.sipo.gov.cn

## 성공적인 기술 매각·라이선스 활동을 위한 대학의 과제

대학 등 연구기관은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활동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학이 독립행정법인이 되면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 기술 매각·라이선스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기술 매각·라이선스 활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1) 성과 기술의 성질, (2) 권리화된 기술의 품질, (3) 시장으로의 정보 확산 방법

### 성과 기술의 성질

1건의 특허가 극적인 권리 확보 효과나 거액의 기술 이전을 성공시키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상 기술 전체를 잘 커버하는 복수의 특허 다발을 구축하여 이러한 다발(포트폴리오)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 그런데 대학의 연구 개발 활동 성과는 단독 특허가 많고,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성과 기술의 성질」의 문제이다.

사실 대학에 연구 개발 성과를 가져오는 소속 교수의 연구 개발 목적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교수 이외의 인물, 즉 대학의 「기술 이전 라이선스 매니저」에 의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 권리화된 기술의 품질

다음으로는 기술의 품질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대학 연구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은 노하우로서 유지하거나, 특허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권리화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대학 기관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로 인해 해외 특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 대학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해외의 기업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은 오히려 미국 내의 대학과 교섭을 포기하고, 일본 대학의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시장은 해외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외국 특허가 적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일본 대학이 많다. 또, 외국 특허가 있어도 청구항 작성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번역에 불과하여 좋은 특허로 완성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청구항을 넓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통설에 따라 청구항의 표현이 너무 광범위한 특허도 많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제품에 결합되기 어려워,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많다. 고품질의 미국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특허 변호사에 직접 청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 시장으로의 정보 확산 방법

아직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활동에서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개발자인 교수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수는 「기술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하는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싶게끔 생각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라이선스 매니저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산학 협력을 성공리에 진행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교수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강한 권리를 획득
- 기술 이전 라이선스 매니저가 특허권 리스트를 검토하여 포트폴리오로 구축할 수 있는 다발을 분류
- 그 다발 단위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프레젠테이션 함

자료출처 : chizai.nikkeibp.co.jp

## 미국과 영국, 내년 특허 소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

**로** 펴 Fulbright & Jaworski는 최근 발표한 6차 연례 소송 동향조사를 통해 다양한 규모의 400여 개 미국 및 영국 기업들을 조사하였다. 이 보고서의 간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소송 원고
  - 사내 변호사들이 파산소송이나 노동, 고용 소송 등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특허분쟁을 미룬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08년 21%의 응답자가 특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반면 2009년에는 17%로 감소하였음. 반면 기술과 제조업 등 특허를 중시하는 산업분야에서는 2배의 수치를 나타냈음
- 특허소송 피고
  - 특허 청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특허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감소하였음
- 전망
  - 기업 변호사들은 앞으로 특허소송 건수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전망함. 응답자의 92%는 특허소송 건수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될 것이라 답변하였음. 기술 기업들의 변호사들은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들 중 15%는 자신의 기업이 피고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 업무는 경기침체기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기업들은 이전보다 소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기업의 15%는 지난 12개월 동안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지출이 증가하였다(미국 17%, 영국 10%). 또한 9%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소송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감소를 전망한 기업은 4%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의 특허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 매출 \$1억 미만인 기업의 95%, \$1억 이상 \$10억 미만인 기업의 89%, \$10억 이상인 기업의 72%는 조사기간 동안 원고로 참여한 분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술 기업 중 35%, 도소매 기업의 27%, 제조기업의 26%, 건강관리 기업의 18%는 지식재산권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적이 있음
- 연 매출 \$1억 미만인 기업의 96%, \$1억 이상 \$10억 미만인 기업의 83%, \$10억 이상인 기업의 59%는 조사기간 동안 피고로 참여한 분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매업 부문 기업 중 37%, 기술 통신 기업 중 32%, 제조업 기업 중 30%, 건강관리 기업 중 26%는 지식재산권 소송에 피고로 참여한 바가 있음
- 응답자의 90% 이상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금보다 많은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음
- 응답자의 90%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금보다 많은 소송에 피고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음

자료출처 : [www.fulbright.com](http://www.fulbright.com)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http://www.ipr-guide.org))